

『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2월 16일

나. 발 의 자 : 박세진, 김상조, 김수민, 김영호
김익수, 김춘남, 손홍섭, 윤영철
이명희, 정하영, 황경환 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 세 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종합장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추진위원회 운영과 회의비 등 제반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매년 화장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
-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공모에 관한 사항, 그리고 추진위원회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고
-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국민의 화장문화 인식의 변화로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, 조속한 시일내에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